

「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
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1조의2)
- 실무위원회 위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박정희대통령 송모관 건립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자문기관 성격의 실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관련 법령 「지방자치법」의 내용상 본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 향후 집행부에서는 실무위원회를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여 박정희대통령 생가·주변 시설물·역사자료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.